



처리절차

※ 매입대금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(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

처리기관

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·위탁을 받은 자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토지공사)

분할납부신청서 작성

접수

검토

분할납부 결정

교부

매매계약서(분할납부) 작성

